

국가인권위원회 중기전략계획(안)

인 권 증 진 행 동 계 획

(2009 ~ 2011)

국가인권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기전략계획(안) 인 권 증 진 행 동 계 획 (2009 ~ 2011)

차 례

I. 중기전략계획 체계	01
1.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개요	01
2.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운영 체계 이해	03
3. 향후 후속 조치	07
II 전략목표	10
1. 전략목표 총론	10
2. 5대 전략목표	15
가. 전략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15
나. 전략목표 II 아동·노인 인권 향상	19
다. 전략목표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22
라. 전략목표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25
마. 전략목표 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30
3. 특별사업	35
가. 북한인권 개선	35
III 실행체계	37
1. 실행체계 개요	37
2. 이행지침	37
3. 기능별 역할	39
4. 조직관리	44

I. 중기전략계획 체계

1.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개요

□ 수립 배경

- 국가인권위 인권증진행동계획('06 ~ '08)의 완료에 따른 후속 작업 필요
- 변화된 국내외 인권환경에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새로운 중기전략계획 수립

□ 정의

- 조직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3~5년간의 나아갈 방향을 명시한 것이 중기전략계획이며, 국가인권위는 2006년도부터 3년간의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그 계획을 '인권증진행동계획'이라고 명명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로 명명
-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은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에 따른 임무와 비전을 감안하여 지향하거나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 방향(what)** 및 인권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지침, 운영원칙 등 **실행체계(how)**를 포괄

□ 주요 특징

- 비전의 유지 및 미션의 변경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미션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 전략목표와 실행체계의 구분
 - 전략목표 : 조직의 임무. 무엇을(what) 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의 구체화

- 실행체계 : 임무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어떻게(how) 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등을 구체화

<= 1차 행동계획 : 직제 중심의 사고가 반영됨. 특히 기능 중심으로 전략목표가 수립돼 인권위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 전략목표와 일반사업의 분리

-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배치하고, 특별사업을 별도로 두며, 그 외 일상적인 사업 등은 일반 사업으로 구분. 향후 조직에서는 전략목표로 업무집중을 유도해 '선택과 집중' 구현

<= 1차 행동계획 : 전략목표와 일반사업의 구분이 분명치 않아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모호함

○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 체계 도입

- 매년 다음 연도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성과계획서 작성 체계를 도입하여, 구성원들의 이해도 향상 및 행정비용 축소 효과 기대
- 위원회 전략 및 업무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형식의 통일성 유지

<= 1차 행동계획 : 행동계획 설명 등이 통일되지 않아 '유사한 내용에 형식만 바뀌는 반복성 행정' 발생

○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전략목표 층위 축소

- 목표 층위를 '전략목표 - 성과목표'의 2단계로 축소하여 중장기에 맞는 위상 수립
- 성과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과제는 매년 익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점검·조정

<= 1차 행동계획 : 3년 계획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열거함으로써 업무계획 등을 수립할 때 변화된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함

□ 체계도 개요(전 영역)

○ 영역 구분

- 위원회가 추진하는 모든 행태의 업무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 함
- 위원회 사업·활동 목표와 실행체계로 대별
- 위원회 사업·활동 목표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와 특별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일반사업으로 나눔
- 실행체계는 기능별 역할, 이행지침, 조직관리 등 총 3개 영역으로 나눔

○ 영역간 역할

- 위원회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실행체계의 3대 영역은 임무(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 또는 지침이며, 실행체계는 전략목표 달성에 최우선 가치를 둠
- 부서 단위에서 연간업무계획서 사업에 명시할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은 체계도에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부분(가운데 표 영역)에 작성

□ 사업·활동 목표(표 왼쪽 부분)

○ 사업·활동 목표 영역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와 특별사업을 표기하며, 그 외 사업과 활동을 일반사업으로 배치

○ 전략목표

- 정의 :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에 따른 임무와 비전을 감안하여 지향하거나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 전략목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며, 비전과 성과목표의 연결고리로서 성과목표가 조직의 임무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침반 기능을 함. 따라서 전략목표는 3개년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성과목표

- 정의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로서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나타내며,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단위의 단기적이고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기관의 연간단위 활동계획을 리드하는 기능을 함

○ 관리과제

- 정의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으로 성과지표의 대상이 됨. 성격에 따라 1년 또는 3년 등 시행년도가 다양하고, 연간업무계획 수립시 집중적으로 검토함.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시에는 제외되며 실질적으로 각 부서 단위에서 수립한 연간업무계획을 반영

○ 특별사업

- 정의 : 전략목표나 성과목표 정도의 비중을 갖지만, 성격상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기능이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사업

○ 일반사업

- 정의 : 위원회 업무 중 그 성격이 기본적 업무 영역에 포함되거나, 전략목표와 별개로 반복·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및 조직관리 성격이 강한 부문을 총칭. 조직 운영은 전략목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사례 : 일반 진정사건 처리, 법 개정시 통상적 법률 검토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 청구, 지출 등 일반 지원 업무 등

□ 기능별 역할(표 위쪽 부분)

○ 기능별 영역

-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업무)에 명시된 내용으로 통상적인 통합형 NI의 기능인 정책, 교육, 조사구제, 협력 등을 의미하며, 기획조정 기능을 별도로 표기하여 그 기능을 두드러지게 함.

- 기능별 영역은 통상적인 정부조직이 기능별 조직형태를 띠고 있어 현재 위원회의 직제 구조와 유사하나, 직제구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기획조정, 정책(법·제도 개선), 교육, 조사구제, 협력/홍보로 나눔
- 각 기능은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염두에 두고, 효과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적용함
- 각 영역에 따라 전략목표와 일반사업의 비율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음. 즉 정책 기능은 전략목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협력은 상대적으로 일반사업의 비중이 높을 수 있음.

○ 업무수행 원칙

-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에서 설정된 5대 전략목표와 특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 기능별 역할은 개별적 수행이 아니라 통합적 차원에서 진행
-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본부나 팀이 수행하는 전략목표(성과목표)로 보이지만, 조사, 정책, 교육, 홍보협력 기능이 종합적으로 투여되는 업무 방식을 전제로 함

<예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추진계획)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정보 인권 증진	프라이버시 보호와 반감시권 강화	- 포럼 등 연구, 실태조사, 정책권고 등의 정책기능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정보인권단체와의 협력,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의 홍보 협력 기능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강화	- 교재개발 및 교육실행 등 교육기능 - 직권조사, 방문조사, 지침 제정 등의 조사기능

□ 이행지침(표 오른쪽 부분)

○ 이행지침 영역

-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에 설정된 전략목표 및 특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또는 그에 해당하는 관리과제를 선정하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업무추진시 가이드라인에 해당
- 국제인권기준 범용화, 성평등 관점, 독립성 강화, 고객·시민 중심화, 파트너십 강화

□ 조직관리(표 아래쪽 부분)

○ 조직관리 영역

- 전략목표 및 특별사업, 영역별 기능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
- 직제 등 변화 관리, 예산·지출 등 지원, 권고이행점검 등 업무효율화를 위한 각종 프로세스 개선, 학습과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업무매뉴얼 개발 등
- 조직관리 영역은 통상적인 정부조직상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업무가 많으나, 직제구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프로세스 개선이나 매뉴얼 개발은 모든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임.

3. 향후 후속 조치

□ 후속조치 의미

-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이 확정되면,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조직관리 기반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 각 영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이 문서로만 남지 않고 업무추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열거

□ 후속 조치 내용

○ 관리과제 내용 확정

- 부서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년 12월 이전에 익년도 연간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완성된 관리과제 내용 확정(전원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수립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별로 각각 성과지표를 마련, 각 사업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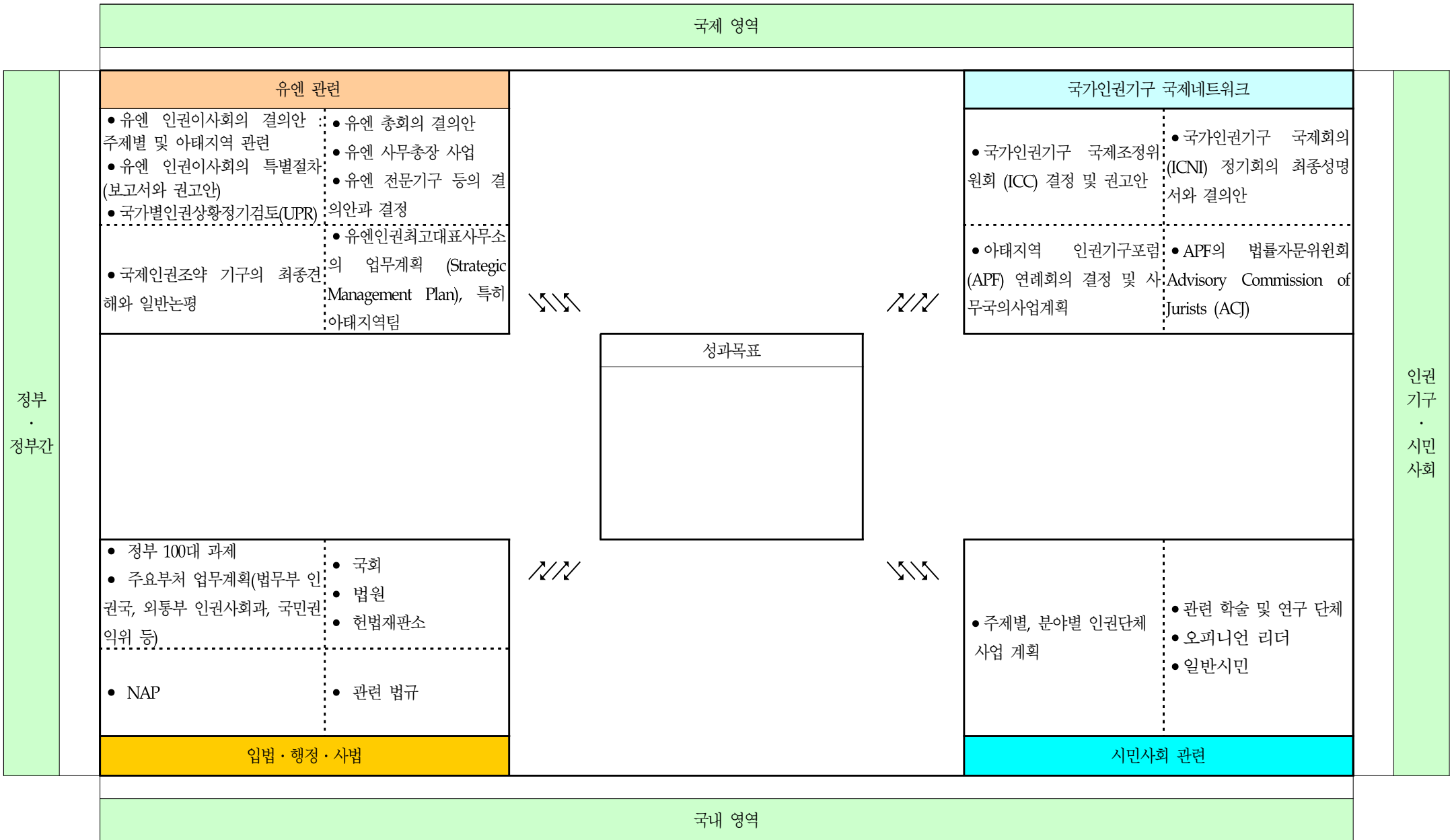
- 전략목표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
 - 기존 기능별 중심의 평가체계를 전략목표(성과목표)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하여 조직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조직 내 관련계획 간의 유기적 연관성 모색
 - 중기전략계획에 연계한 중기재정계획, 중기인력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등의 수립 추진

- 중기전략계획에 따른 조직재편 및 인력재배치 추진
 - 그간 전략계획과 직제개편이 연계되지 못하여 목표추진에 효율적인 조직구조 형태를 갖추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 ⇒ 중기전략계획의 핵심적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직제안 마련

- 성과목표와 영역별 체계도 정리
 - 성과목표별로 국제사회(유엔, 국가인권기구) 및 국내(정부, 국회, 시민단체) 주요 이슈 간의 연관성을 체계화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업무수행 기반 마련(아래 표)

성과목표와 영역간 체계도



II 전략목표

1. 전략목표 총론

□ 미션 재정립

- 미션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 5개의 전략목표를 통괄하는 위원회 차원의 임무로서 인권위의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전략의 총론적 의미 함축
- 선진화 패러다임을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권이 선진화의 핵심 가치이자 기준임을 강조하며,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주된 사명으로 설립된 준국제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정체성 반영
- 현 정부의 비전인 “선진 인류국가 실현”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인권외교와 문화외교 강화(No 89)와의 높은 연관성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인권 법제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 특히 유엔이 제시한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향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이는 인권전담 국가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이자 핵심사명
- 구체적으로 ‘08. 6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조약 이행모니터 기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향후 3년간의 우선적 과제임.
- 한편 유엔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측면에서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안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인권 모범국가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붙임 : 우리나라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표)

□ 전략목표의 선정 배경

- 한국 인권현실의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 주요 특성 반영
- 국제인권조약과의 연관성 고려
- 위원회의 3대 기능(정책, 조사, 교육)을 포괄하는 영역 중 3년간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야 할 분야를 우선 선정

○ 전략목표별 환경요인 분석

5대 전략 목표	환경요인 및 목표 선정 근거
○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근간 - 위원회법상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우선적 과제 - 법질서 강화 추세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 - 인권 선진국 도약의 필수적 조건
○ 아동·노인 인권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기구의 지적에 대한 국내적 노력 필요 - 아동·노인에 대한 인권 개념 확장,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보호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보장체제 마련
○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와 신빈곤 시대에 따른 인권사각지대 지원 - 빈곤층 확대에 따른 경제적 약자 보호 - 사회권적 인권 개념의 적극적 해석 및 확산
○ 다문화 사회의 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과 결혼 등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권적 대응 - 우리 사회 내부의 인종차별적 인식 철폐 - 이주민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친화적 다문화 정립 - 난민 등 국제적 인권약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에 대한 사회적 판단기준 마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 - 차별문제 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장애인 인권 증진

□ 특별사업 선정 배경

- 특별사업은 사업에 투입한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는 전략목표에 못 미치지만 그 사업의 시급성과 정치적 의미와 효과가 매우 높고 전략목표와의 유기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업을 의미. 특별사업의 실행체계는 Task-Force 성격을 지니는 특별위원회나 전문가위원회의와 사무국내 소규모 팀으로 구성. 기능적 차원

에서도 정책, 조사, 교육 및 협력 가운데 특정 기능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 필요에 따라서는 추후에 일반사업 또는 전략목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음.

※ 북한인권은 곧 출범할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특별사업으로 배치.

□ 5대 전략과제 의미

-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의 3대 권리 영역을 현재와 향후 3~5년 예상되는 한국의 주요 인권 과제와 도전을 개념화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인권위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력해야 할 우선적 인권분야를 의미
- 전략목표와 국제인권조약의 연관성

5대 전략목표	국제인권조약
○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자유권 규약과 고문방지 협약
○ 아동·노인 인권 향상	아동권리 협약
○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사회권 규약
○ 다문화 사회의 인권 보장	인종차별철폐 협약, 이주노동자협약, 난민 협약
○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 협약

- 2009~2011년 3개년 간 집중하기로 정한 5대 전략목표와 1개 특별사업은 위원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지 여타 인권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 기간 내에 위원회가 대처해야만 하는 중요한 인권이슈가 떠오를 수 있으므로 동 전략계획은 매년 인권상황에 연동하여 계획(관리과제)을 수정·보완하는 등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수립

□ 전략목표 분류 방식

- 영역과 대상(피해자, 집단)에 따른 인권분류법 방식에 따라, 전략목표1(자유권)과 전략목표5(평등권)는 영역별, 전략목표2(아동·노인)와 전략목표3(경제적 약자), 전략목표4(다문화/이주민)는 대상에 다름
- 사회권은 독자적인 전략목표를 구성하지 않고 대상별 전략목표(2, 3, 4)와 전략목

표5(평등권) 내에서 다루는 것으로 함.

- 이는 사회권의 다양성과 대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임.
- 전략목표하의 성과목표에서 내용영역과 대상이 결합한 복합주제(예- 장애여성,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는 대상 중심의 성과목표하에서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성평등(성차별)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전략목표5)에서 별도 성과목표로 다루는 동시에, 여성인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 모든 영역과 대상에서 공통된 cross-cutting 이슈로 성 평등 관점을 견지함.
 - ※ 젠더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별도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로 다룸(예- 결혼이주여성 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전략목표(안)**

전략 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II. 아동 노인 인권 향상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성과 목표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	2-1. 학생 인권 개선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5-1.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입법화	체벌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1-2. 표현의 자유 보장	2-2.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5-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안
	1-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3-3. 비정규직 인권 보호	4-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5-3. 장애인차별 개선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행위 강요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촉진
	1-4. 정보인권 증진	2-4. 노인 인권보호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5-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5-5. 여성 인권 보호
					여성인권 사각지대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	○ 북한 주민(북한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검토 ○ 새터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 ○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	---------	---	--	--	--

2. 5대 전략목표

전략목표 I	기본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

□ 배경 및 필요성

- 자유권은 보편적 인권보호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의 근간
- 자유권의 확장을 전제로 평등권과 사회권 수준도 향상 가능
- 자유권 보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위원회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태동할 수 있었던 배경
- 법 제도는 기본적 인권보호를 전제로 본연의 의미를 갖는 바, 법치와 인권의 상호 보완적 관계 정립 필요
- 자유권 신장은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필수적 과제이며, 자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주요 내용

-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 정보인권 증진

성과목표 I-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한다(인신의 자유)
----------	-----------------------------------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 ⇒ 사형제 폐지를 통한 생명권 존중 국가 반열 진입, 과도한 체포, 영장, 구금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 절실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위원회 출범 이후 공권력 집행기관의 점진적 인권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 체포, 영장, 구금제도 전반에 걸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

추진계획

- 신체의 자유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는 위원회가 출범 이후 가장 폭넓게 다뤄온 주제임. 따라서 축적된 사례 등을 토대로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3) 관리과제(예시)

- 사형제 폐지 입법화

성과목표 I-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의 자유권 보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임.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
⇒ 검열 철폐, 미디어의 양적 질적 확산,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실례임.
- 현행 집시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 존재함. 공권력 집행기관은 불법시위 근절을 위해 대폭 제한을,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전면 개정 주장
- 과도한 집회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에 평화적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청됨.

추진 계획

- 언론과 출판이 건강한 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평화적 집회문화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3) 관리과제(예시)

-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성과목표 I-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는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것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분단국가 특성에서 기인한 정치적 쟁점이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충돌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 개폐,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지체되는 상황
- 종교의 자유 및 종교간 차별은 2008년 이후 폭발적인 사회 이슈로 등장(특정 종교 차별, 시설과 학교에서의 종교 강요,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등).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 예상

추진 계획

- 단기적 입법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적 검토, 인권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개선 ⇒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제수준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 노력

3) 관리과제(예시)

-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행위 강요 개선

성과목표 I-4

정보인권을 증진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소통의 방식도 급변함. 사이버 공간 및 온라인 미디어를 둘러싼 인권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인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 신장에 기여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 논란 지속 ⇒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 계층간 정보 격차 심화,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정보인권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토 필요

추진 계획

- 정보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할 국가기관 지정 필요 ⇒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인권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모니터링

3) 관리과제(예시)

-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전략목표II**아동·노인의 인권을 향상한다** 배경 및 필요성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의 아동 청소년 인권문제를 꾸준히 지적 ⇒ 국제적 위신 하락
- 국제기준으로 볼 때 아동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임 ⇒ 인권 개념의 확장 필요
-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제고 ⇒ 비학생 청소년, 빈곤층 아동, 가출 청소년, 미혼모 자녀, 가족해체 등으로 방치된 아동 등
-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스포츠 선수의 인권 개선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세대간 이질감 해소

 주요 내용

- 학생 인권 개선
-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 노인 인권 보호

성과목표II-1**학생 인권을 개선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학생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교가 다양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인권 개선에 기여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아동도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와 미성숙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현상이 만연. 체벌, 부당한 학교생활규정, 학교폭력과 집단적 따돌림 현상 등에 따른 피해 속출

추진 계획

- 아동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문제해결 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권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도출

3) 관리과제(예시)

- 체벌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성과목표Ⅱ-2

취약 계층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없는 계층간 양극화 존재 ⇒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인권 향상 및 사회 불평등 해소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학력만능주의와 서열주의 등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실업계 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불리한 조건에 놓이고 있음.
- 실업계 학교나 직업교육 시설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처우나 반인권적 대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추진 계획

-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잘못된 관행 개선 ⇒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제도적 방안 마련, 노동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방안 검토

3) 관리과제(예시)

-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성과목표Ⅱ-3

스포츠 선수의 인권을 개선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은 엘리트체육을 고집해 온 한국 사회의 왜곡된 정책을 반영하는 것임. 체육계 전반에 인권 개념을 전파함으로써 스포츠 선수의 전반적 인권 개선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 외부환경 분석
 - 운동선수들에게 여타의 사회활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운동만을 강요하는 관행 지속 ⇒ 기본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 필요
 - 체육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걸쳐 인권의식 결여 ⇒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의식 향상 교육 필요
- 추진 계획
 -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검토

3) 관리과제(예시)

-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개선

성과목표Ⅱ-4

노인 인권을 보호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2014년 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 보호대책 마련, 경쟁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인 계층에 대한 지원 ⇒ 노인 인권 향상에 기여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 외부환경 분석

-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인구 증가율 ⇒ 기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수급 구조에 치명적 결함 상존, 장기요양보험 등 새롭게 등장한 제도의 역효과 우려
- 핵가족 확대에 따른 노인 경시 풍조 확산,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노인의 육아 부담 증가, 시설 거주 노인 및 치매 노인 등에 대한 학대 등의 사회문제화

□ 추진 계획

-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재취업 대책 등 지원방안 검토, 지역간 계층간 의료서비스 균질화, 노인을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정책 수립,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3) 관리과제(예시)

-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전략목표Ⅲ	경제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한다.
--------------	--------------------------

□ 배경 및 필요성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확대 재편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및 빈곤계층 증가 불가피
- 2008년 상반기까지 국민 1인당 실질소득 지속적 감소세, 2007년 기준 한국 저임금계층 비율 OECD 국가 중 1위 ⇒ 경제적 약자의 생활고 가중 우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경제적 약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제위기시 취약계층 인권보호 ⇒ 절대 빈곤층, 차상위 계층 등의 최소 생활조건 보장,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빈곤의 대물림 방지,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기초 서비스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주요 내용

-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 빈곤 계층 인권 보장
- 비정규직 인권 보호

성과목표Ⅲ-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국제기준을 근거 삼아 국내적으로 사회권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기준 제시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 외부환경 분석

- 사회권 개선은 성격상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함.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
-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사회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 마련 작업이 활발함.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준 부재

□ 추진 계획

- 사회권을 중요한 인권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필요 ⇒ 지속적 모니터링과 국제기준 확산을 통해 정부 정책에 사회권 개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유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3) 관리과제(예시)

-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성과목표Ⅲ-2

빈곤 계층 인권을 보장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경제적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절대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지속적 양산. 노숙인, 철거민 등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필요성 대두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 외부환경 분석

- 알코올 및 장애로 인한 만성 노숙자, 일시적 취업난에 따른 실직 노숙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폭력과 성폭력 등에 무방비 노출
- 철거로 인한 무주택자, 주민등록 미소지 거주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는 계층 존재 ⇒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자 발생

□ 추진 계획

- 치료 프로그램, 긴급 구호대책, 직업 훈련, 수용 및 이주 대책 등 취약계층의 상태와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검토 시급, 빈곤계층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

3) 관리과제(예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성과목표Ⅲ-3

비정규직 인권을 보호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확대,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갈등

심화 ⇒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인권 향상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 외부환경 분석

- 현행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규정이 노동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 급증 ⇒ 노동부의 '4년 연장' 방안이 제시된 이후 최초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
-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심각, 편법적 파견근로 확산 ⇒ 노사갈등 심화, 노노갈등 확산, 노정갈등 잠복

□ 추진 계획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대안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 마련,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 비정규직 보호 대책 수립

3) 관리과제(예시)

-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전략목표Ⅳ	다문화 사회의 인권을 증진한다.
--------------	--------------------------

□ 배경 및 필요성

-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단일민족 국가이미지 극복하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08년 한국 방문 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과 이행의 필요성 대두
- 결혼하는 7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인 상황에서,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천박한 상황 ⇒ 타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한국식 동

화에 초점을 두는 양상

-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이주민의 교육권, 건강권, 투표권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주요 내용

-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성과목표IV-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을 강화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다문화'는 존재하되 '다문화 정책'은 부재한 현실에 대한 검토 필요 ⇒ 인권 친화적인 다문화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 외부환경 분석

- 다문화의 핵심 개념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주민들이 독립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반면 현재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이주민의 한국식 동화에만 치중하는 경향
-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쟁적으로 왜곡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추진 계획

-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다문화 현상과 담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3) 관리과제(예시)

-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목표IV-2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OECD 가입국이며 국제 교역량 10위권의 경제강국에 부합하는 이주노동자 보호 정책 절실 ⇒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정착은 인권보호를 넘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무리한 단속, 국제인권규정에 반하는 강제출국, 임금 체불, 폭행, 감금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임.
- 유입 과정의 브로커 사기가 여전하고, 본국 송금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이주노동자 송금은 ODA 보다도 큰 규모

추진 계획

- 이주노동자 협약 가입을 통한 국제기준의 국내적 이행 노력, 투명한 송출 및 안정한 송금 루트 확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3) 관리과제(예시)

-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성과목표IV-3

결혼이주여성 인권을 증진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이주여성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 안정적 정착 없이 인권 증진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시급하고도 필수적 과제임.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국제결혼 추진 및 결혼중개업소의 인신매매적 결혼 추진 과정에서 이주여성 인격권 등이 심각하게 훼손 ⇒ 동남아시아 등 국제사회의 집중적 비판 ⇒ 국가 이미지 훼손 심각
- 언어, 생활환경, 생활습관, 교육수준 등의 차이로 이주여성들이 심각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가정 폭력과 성폭행 등에 노출

추진 계획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 및 결혼 후 생활과정 모니터링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3) 관리과제(예시)

-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성과목표Ⅳ-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을 보장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인권문제 발생. 자녀의 국적 문제, 피부색에 의한 차별과 관련한 인권적 접근은 다문화 사회에서 필수 요소임.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학교생활에서의 인종차별, 부모와 자녀의 자기 정체성 문제 등
- 다문화 가정의 경우 빈곤 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들에 대한 사회 안 전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서구사회의 인종갈등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 추진 계획

-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 다문화 가정 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권리 보장

3) 관리과제(예시)

-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 권리 보장

전략목표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을 강화한다.
-------	----------------------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차별 시정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근거이자 인권위법에 명시된 중요한 책임
- 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 부처의 차별시정 기능이 위원회 중심으로 통합되는 흐름
- 성희롱, 성차별 업무 이관(2005), 장애차별금지법 시행(2008),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진행)
-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 장애차별관련 위원회 진정 급증
- 차별문제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제기 ⇒ 17대 국회에서 논의 도중 폐기
-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주요 내용

- 차별금지법 제정

-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적 이행 강화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 여성 인권 보호

성과목표V-1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위원회는 3년간의 검토를 거쳐 2006년 7월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17대 국회에서 논의 도중 회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 ⇒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여전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 외부환경 분석
 -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다양한 차별문제에 대해 기본적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준거 법률의 부재
 - 차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관련 법률과 국제인권기준 등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차별문제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 부족
- 추진 계획
 - 정부기관, NGO, 전문가 그룹, 언론 등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으로 차별금지법 관련 기본 법률 제정 추진

3) 관리과제(예시)

- 차별금지법 제정

성과목표V-2**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개선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차별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이 고용임 ⇒ 성, 장애, 종교, 나이, 피부색,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각종 고용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곧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해당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준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관련 예산 삭감 조치
-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종교차별금지법(검토중) 등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가 ⇒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 증대

 추진 계획

- 관련 부처와 협의해 주요 인권정책에 차별적 요소가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차별 집단에 대한 개선책 마련

3) 관리과제(예시)

-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안

성과목표V-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적 이행을 강화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2007년 제정돼 2008년 시행된 장차법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장차법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장차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미반영 ⇒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시정을 이끌어내는데 한계 노출
- 장차법 이행 감시기관인 인권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부족 ⇒ 장애차별 전문 인력 충원 유보 및 일부 관련 예산 삭감

추진 계획

-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차법 체제 정비, 장애인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범국민적 차별의식 개선 추진

3) 관리과제(예시)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촉진

성과목표 V-4

정신장애인 인권을 보호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때문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함. ⇒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차별 시정에 기여할 수 있음.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외부환경 분석

- 대다수 정신장애인들이 음지에 갇혀 있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 ⇒ 시설수용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권침해가 잠복되고 은폐됨.
-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디어의 과장 보도, 잘못된 지식의 확대 재생산 ⇒ 사회적 낙인과 차별 인식 증폭, 폐쇄시설 의존도 심화

추진 계획

- 정신병원과 대규모 시설을 없앤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탈시설 정책 도입, 정

신장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3) 관리과제(예시)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성과목표V-5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

1) 전략목표와의 연계성

- 정부정책과 민간 프로그램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의 중요성을 확산시킴으로써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
 - ※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이행지침 '성평등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른 성과목표에서 다루지 못한 여성인권 과제를 별도 추진함.

2) 외부환경 분석 및 추진 계획

- 외부환경 분석
 -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 조정된 이후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감소 ⇒ 유리벽, 유리천장 문제 심화 가능성
 - 성차별,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둔감성 여전 ⇒ 사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 추진 계획
 - 정부 부처의 여성인권관련 정책 모니터링 ⇒ 여성인권 증진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3) 관리과제(예시)

- 여성인권 사각지대 개선

3. 특별사업

특별사업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 촉구
------	------------------

□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 2003. 4.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연구사업의 필요성 제기
- 2003. 제40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내 비상설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 구성
- 2003-2008년까지 북한인권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연구 활동 전개
- 2006.12.1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공표
- 2007년도 10대 중점추진과제로 '북한인권' 설정
- 2008년도 위원회 부서별 업무계획 중 6대 중점사업 과제의 하나로 '북한인권 개선 위한 정책 활동 강화' 설정
- ※ 위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파악을 포함한 '재외 탈북자 인권', '새터민 인권',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국제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2008년도 주요 사업으로 선정

○ 필요성

- 위원회는 이미 '북한인권'의 범주에 북한지역내 북한주민의 인권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실태 파악 필요
- 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 현지조사 그리고 토론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일련의 조사·연구 통한 북한인권 개선 촉구

□ 주요 내용

○ 북한 주민(북한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 경제적, 사회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 상황 파악

- 북한 주민의 생계활동 및 사회적 삶의 질 파악을 위한 연구 사업 추진
 -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정책협의회 지속 개최
-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 재외 탈북자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
 - 재외탈북자의 지위와 관련한 다양한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차원적으로 보호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탈북자 인권 관련국과 공식 절차가 수립될 수 있도록 외교 협의 강화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검토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사구시적 태도, 합의 가능성, 보편성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 수행
 - 정책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
- 새터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
 - 생존을 위한 적응 지원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으로 구체적 방안 모색
 - 새터민 입국과정, 교육과정,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조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새터민 청소년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 제도 방안 모색
-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 유엔의 관련 기구, 관련국, 국제인권 비정부기구 등 방문
 - 북한인권, 국제인권, 기타 한반도 관련 기구 및 전문가 토론회 및 초청 강연 추진, 이를 통한 의견청취를 통한 정책개발

Ⅲ 실행체계

1. 실행체계 개요

□ 정의

-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에서 제시한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적(how)인 측면을 포괄한 개념
- 행동계획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능별(정책, 교육, 조사구제, 협력 홍보) 역할, 조직관리 측면, 공통적 관점으로서의 이행지침 등으로 구성

2. 이행지침

□ 국제인권기준의 상용화

- 전략목표 등은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보편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수행되어야 함. 특히 주요 국제인권조약,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은 유념하여야 함
 - 아울러 유엔이사회 결의안 결의안과 주요 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결정 및 권고안 등이 참조를 일상화하여 국제적 인권 흐름과 발맞춰 위원회 미션달성에 기여함
- ※ 향후 조치로서 각 성과목표별 관련 목록 제공 예정

□ 성 평등 관점

-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이 지니는 함의를 고려하여 성 평등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전략목표 등의 수행에 적극 반영. 여성인권의 중요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목표를 설정해 성 평등 관점이 전 영역에 걸쳐 검토될 수 있도록 함
- 전략목표 수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유념할 지침으로, 각 일상사업이나 지원 업무 등에서도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함

□ 독립성 강화

- 각종 조약 및 조약기구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서 각종 모니터링기구 및 감시기구를 설치, 지정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독립성 강조
 -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며,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만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
- 독립성 강화는 명확한 관할 범위와 적절한 권한을 갖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 의미하며, 인권위와 유사하다고 인식되는 다른 조직들과 가장 큰 차별화 전략이기도 함
- 새 정부 출범 시 확인된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인 독립성의 관점에서 전략목표 등을 수행 추진하고, 또한 조직, 인사, 예산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유념할 지침으로 인식하여 국가기관과의 행정적 측면에서도 기본 정신으로 구현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헌법기구화, 단기적으로 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조직(부령제정권) 및 예산 독립 추진

□ 고객/시민 중심화

- 위원회의 존재기반인 국민(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목표 등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권이슈의 적극개발 및 천착이 필요하고, 업무수행시에도 진정한 등의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정신 구현 노력
- 또한 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국민(시민)들의 의견이나 상황을 중심에 두고 사전 정책홍보 등을 추진하는 자세와 협력과 참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 필요

□ 파트너십 강화

- 시민사회, 정부 기관, 국회 및 정당, 언론 및 오피니언, 사법부 및 인권이슈를 다

루는 모든 이들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 추구. 또한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 등과 긴밀한 파트너십 강화

-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인권침해의 원인이 이해부족인지, 고의 또는 구조적 요인인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필요. 독립성을 견지하되 정부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권친화적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
- 성과목표(관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각계의 관계자들과 실질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구축
- ※ 향후 조치로서 각 성과목표별 관련 목록 제공 예정(정부 100대 과제, NAP, 관련 시민단체 등)

3. 기능별 역할

□ 기획조정

- 내용 : 위원회의 미션에 따른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전략 및 연간업무계획수립,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추진 과정 모니터링, 평가 및 특별보고 업무 추진
- 유의점 : 위원회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기능으로, 부서 및 기능 위주의 관점을 지양하고 전략목표 중심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할 있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 역할

□ 정책(법·제도 개선 등)

- 내용 : 기능으로서의 정책을 의미하며 교육, 조사구제와 대등한 의미로 사용.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이슈가 되는 인권 의제를 발굴하거나, 관련 법 등의 적용 및 입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증진에 기여. 특히 법제개선 업무를 강화하고, 사회권 영역은 지표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이드라인 제시 주력.
- 이슈를 발굴해 추진하는 정책업무 가운데는 사업형태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스포츠 선수 인권, 북한인권, 노인인권, 아동인권 등)

○ 유의 : 위원회 내에서 '정책'에 대한 용어 혼용이 존재해 기능으로서의 정책과 구분해 '인권위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인권위의 정책 : 인권위의 비전과 미션에 따른 방향으로서의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말하며 이때 정책이란, 인권위가 가진 4대 기능(정책, 조사구제, 교육, 협력)을 포괄함

○ 세부기능

- 모니터링

• 사회 인권 현안 및 입법 활동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추진하되, 모니터링의 활용 결과 및 성과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 정책의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발굴 시스템 마련

- 포럼 등 연구

• 인권 의제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 및 의제 선정 방법 등의 일환으로 포럼 운영, 청문회, 토론회 등 추진하되, 운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성과 목표(관리과제)의 성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

• 인권위법 제20조에 있는 협의기능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추진(이행지침의 파트너십 강화)

- 실태조사

• 실태조사의 주제 발굴 및 수행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과정에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결과가 성과목표(관리과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정책 및 의견표명

• 이상의 세부기능을 통해 발굴한 사안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완료.

• 권고 및 의견표명부터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추진하는 인식 필요

□ 교육

○ 내용 : 교육기능을 활용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과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 특히 지역사무소를 축으로 한 교육활성화 적극 모색.

- 유의 : 전략목표(성과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관리과제 개발 및 성과목표의 목표치 달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교육기능의 세부사항을 적재적소에 활용
 - 교육의 직접적 수행보다는 교재 개발과 인권교육을 추진할 강사 양성에 집중(현직교사 등 활용)하여, 인권교육의 사회 보편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력 대비 효과의 극대화 추구.

○ 세부기능

- 기반구축

- 인권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특히 성과목표(관리과제)에 기반하여 인권교육이 취약한 영역에 대한 체계적 접근

- 제도화

- 사회 각 집단별로 활성화된 각종 교육기관을 활용한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교재개발

- 성과목표(관리과제)에 기여할 교재 개발 추진. 교육생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예 - 인권일반론을 중심으로 한 언론인 인권교육보다, 기사 기획을 통한 인권마인드 제고, 문화콘텐츠 제작 방식 다양화(시민사회 현장 전문가들에게 참여 기회 제공 등)

- 교육실행

- 인권강사단 활용 및 전문성·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 외부 교육기관의 적극적 활용.
- 지역 역량을 활용한 인권교육 모색

□ 조사구제

- 내용 : 상담·진정접수·조사 및 구제 등 일련의 위원회 기능을 포괄함. 아울러 기획조사(직권, 방문,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활용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

책 개선 업무도 포함. 포괄적 예방 중심의 조사업무 강화

- 이때의 '정책'은 기능으로서의 정책 의미보다는 법·제도로 구현된 특정 사안의 국가방침, 즉 내용상의 정책을 의미함.
- 조기경보체제 도입(검토) : 인권현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긴급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 사안별·수위별 조기경보 발령, 특정 이슈에 대한 스페셜 리포트 발간 등

○ 유의 : 개별사건 조사는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그 업무 비중을 줄이고, 국가 권력의 구조적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에 주력함.

- 개별 사건처리 절차 개선 : 상담과 조사의 통합, 상임위원회 의한 접수단계(조사 부서 송부시가 아닌)에서의 필터링 추진, 사안에 따른 처리절차 이원화. 지역사무소의 조사권 확대 등

○ 세부기능

- 상담 진정

- 찾아가는 인권서비스 실현.
- 순회상담의 효과성 제고

- 직권·방문

- 포괄적 예방 중심의 조사업무 강화를 위한 기능으로 적극 활용.
- 연간계획 수립 당시부터 성과목표(관리과제)에 부합한 의제를 개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지향

- 실태조사

- 실태조사의 주제 발굴 및 수행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과정에서 인권 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결과가 성과목표(관리과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정책, 조사,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 지침 등 제정

- 기획조사(직권, 방문, 실태) 결과 등 활용,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

- 언론보도 등을 활용한 압박과 관계자협의회 등을 활용한 협의 방식을 적절히 활용

□ 협력·홍보

- 내용 : 이행지침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협력·홍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각 대상별 기반구축을 점진 강화한 뒤 체계적 협력 프로그램 추진. 인권위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협력 외연 확대(인권위 홍보 및 각계 의견 수렴)

- 유의 : 성과목표(관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대상별 협력 리스트 확보·관리(PCRM 및 지식관리시스템 등록 등)

※ 향후 조치로서 각 성과목표별 관련 목록 제공 예정(정부 100대 과제, NAP, 관련 시민단체 등)

○ 세부기능

- 정부 등 협력

- 정부기관 협의체 구성(검찰·경찰·국정원·국방부·출입국사무소 등 공권력 집행기관) 및 연간 단위 부처별 인권지수 공표(검토)
- 여야를 망라한 국회 인권포럼 구성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계류 사건 및 인권 정보 공유

- 단체 협력

- 전통적 인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인권이슈와 관련한 단체들과의 관계 모색
- 현장 활동가들이 발굴한 인권 아젠더 적극 수용
- 지역사무소를 활용한 협력 강화(비수도권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인권분야 연구자 DB 구축, 지역대학·지역 NGO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제협력

-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단순 관계 유지가 아닌, 인권위의 전략 목표(성과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료 공유, 국제연대, 의제공유 등 실

질적 협력 방안 마련

- 인권기구 교류 사업 등도 성과목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인권외교, 유엔 인권이사회의장국 선출, ICC 의장기구 선출 등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 강구

- 정책 홍보

- 사업결과뿐만 아니라, 그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 홍보를 시도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정책 홍보 추진(이때의 '정책'은 위원회의 정책, 즉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주로 의미함).
-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논란이 되는 인권현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 청취
-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홍보 방식 접목(중요과제 다큐멘터리 제작 공모 등)
- 사이버 홍보 강화(젊은 세대를 위한 사이버 홍보, 어린이용 사이버체험관 등 개발)
- PCRM 활용

4. 조직관리

□ 조직운영 및 변화관리

- 내용 : 인권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토대와 인권위의 법적 지위 강화 등을 위한 활동 및 상임위원 역할 재정립. 조직(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 인사·평가, 예산·지출, 정보화 등.
- 유의 : 조직운영 및 변화관리의 목적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며, 이로 인해 인권위가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중요
- 세부사항
 - 상임위원 역할 재정립
 - 위상 관련 : 상임위원은 위원장 -사무총장과의 관계에서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이견을 제시하는 역할

- 업무 관련 : 진정사건 분류 단계에 참여(필터링). 위원장이 지정한 특정사업과 관련해 위원장에 준한 권한 행사
- 운영 관련 : 승진 등 인사 관련 사전 설명, 승진 등 인사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 추진,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업무 평가에 관여

- 조직

- 인권위의 헌법기구화 추진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
- 새로운 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지속 관리
- 국민고객 만족도 조사 및 지원 업무에 대한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 인사·평가

- 인권위의 인재상을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 계획 수립
- 조직 내 전보 등에 있어 공정한 인사와 더불어 효과적인 인사 방안 마련
- 전략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 개발 및 도입
- 개인역량 발전을 돕는 다면평가제 개발 및 도입

- 예산·지출

- 부서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전략목표에 근거한 예산 편성 추진 및 관리

- 정보화

- 기존 정보화 체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체계적 점검 실시(결정문 등록, 온나라시스템 주요기능 활용 등)
- 홈페이지의 대중화 작업 지속(정책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내용 : 위원회의 각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 유의 : 업무 프로세스 과제를 특정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고, 추진목록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조직관리가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 세부사항

※ 직제개편 방향 설정 후 각 기능별로 개선이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여 추진

□ 구성원 전문성 강화

○ 내용 :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및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한결같은 서비스 제공.

○ 유의 : 06~08년도에서 운영된 사례를 고도화하는 한편, 새로운 관리 체계의 능동적 도입 및 정기적인 점검 체계 구현. 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 부서 명확화

○ 세부사항

- 직원 전문성 교육

- 현행 상시학습체계의 성과(다양한 직원 프로그램 운영, 필수 의무교육과 자율교육의 구분 운영, 외부 교육기관 선별 활용) 계승
- 직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현행 프로그램 고도화(직무별 전문성 및 직급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체계화·제도화, 상시학습시간 확대, 간부진들의 직원 육성 의무화,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경력관리제(CDP) 도입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 조성 차원에서 경력관리제 도입(주요업무에 따라 순차적 도입)과 보직관리 체계 개편

- 인권위원 업무 체계화

- 인권위원 워크숍 정례화.
- 신입 인권위원 맞춤형 브리핑 등 체계화.
- 인권위원의 현장방문 프로그램 체계화.
- 인권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 소통기회 마련 및 지원.

- 업무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 새로운 중기계획 수립 및 직제개편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업무매뉴얼의 고도화 및 신규 업무 매뉴얼 개발
- 업무매뉴얼에 대한 연간 정기 점검 관리.(인권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지식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 08년 개발한 인권행정정보시스템내의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 공유(암묵지의 형식지화 추진)
- 직무탈진감 극복 프로그램 운영
 - 업무 속성상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상담·조사부서 등 민원인들로 인한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한 조직적 개입방안 강구
- 구성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붙임>

우리나라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2008년 8월 기준)

조 약 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7.7.18기준)	한국가입 (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 12. 21. (69. 1. 4.)	173 *08.4.21. 기준	78. 12. 05. (79. 1.4.)	*14조 선언(1997. 3.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162 *08.7.22. 기준	90. 4. 10. (90. 7. 10.)	14조5항, 22조 (23조4항 '91.3.15. 유보철회 /14조7항 '93.1.21. 유보철회 /14조 5항 '07.4.2. 유보철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66. 12.16. (76. 1. 3.)	159 *08.7.22. 기준	90. 4. 10. (90. 7.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 12. 18. (81. 9. 3.)	185 *07.8.9. 기준	84. 12. 27. (85. 1. 26.)	16조1항 (g) (16조1항 중(c),(d),(f) '91.3.15. 철회 / 9조 '99.8.24. 철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 약(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 12. 10. (87. 6. 26.)	145 *08.4.18. 기준	95. 1. 9. (95. 2.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 11. 20. (90. 9. 2.)	193 *08.2.12. 기준	91. 11. 20. (91. 12. 20)	9조3항, 21조(a), 40조2항 (b),(v)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CR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90. 12. 18. (03. 7. 1.)	37 *07.7.18. 기준	미가입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미발효			
장애인권리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6. 12. 13. (미발효)		서명	

조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기준)	한국가입 (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ICCPR-OP1)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66. 12. 16. (76. 3. 23.)	111 *08.3.5. 기준	90. 4. 10. (90. 7. 10.)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CEDAW)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99. 10. 6 (00.12.22)	90 *08.1.25. 기준	06. 10 .18 (07.1.1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OP-CAT)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02. 12. 18. (06. 6. 22.)	35 *08.6.12. 기준	미가입	법무부 검토 중
장애인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6. 12. 12. (미발효)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8. 12. 9. (51. 1. 12.)	140 *07.8.9 기준	50. 10. 14. (51. 12. 12.)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49. 12. 2. (51. 7. 25.)	80 *07.8.9. 기준	62. 2. 13. (62. 5. 1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54. 9. 28. (60. 6. 6.)	62 *07.8.9. 기준	62. 8. 22. (62. 11. 20.)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1. 7. 28. (54. 4. 22.)	144 *07.8.9. 기준	92. 12. 3. (93. 3. 3.)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제7조 유보 *선언내용: 대한민국은 제1조 A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이 협약 제1조 B에 따라 선언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67. 1. 31. (67. 10. 4.)	144 *07.8.9. 기준	92. 12. 3 (92. 12. 3.)	대한민국은 체약국의 영역에서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입법상의 상호주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 유보

조약명	협약채택 (발효)	당사국수 (021297년)	한국가입 (발효)	유보조항 (유보철회)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52. 12. 20. (54. 7. 7.)	120 *07.8.9. 기준	59. 6. 23. (59. 9. 21.)	
고용 정책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22)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Policy	64. 7. 9. (66. 7. 15.)	97 *07.8.9. 기준	92. 12. 9. (93. 12. 9.)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00)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51. 6. 29. (53. 5. 23.)	164 *07.8.9. 기준	97. 12. 8 (98. 12. 8.)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11)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58. 6. 25. (60. 6. 15.)	166 *07.8.9. 기준	98. 12. 4. (99. 12. 4.)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00. 5. 25. (02. 2. 12.)	117 *07.8.9. 기준	04.9.24 (04.10.24)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00. 5. 25. (02. 1. 18.)	121 *07.8.9. 기준	04.9.24 (04.10.24)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ILO협약 no.135)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and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71. 6. 23. (73. 6. 30.)	81 *07.8.9. 기준	01. 12. 27. (02. 12. 2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8. 7. 17. (02. 7. 1.)	105 *07.8.9. 기준	02. 11. 13. (03. 2. 1.)	

<한국 미가입 국제인권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미발효)
- 장애
 -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미발효)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미발효)
- 전쟁범죄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교육
 -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

- 노예제도 협약 Slavery Convention
- 노예제도 협약의 개정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Slavery Convention
- 노예제도, 노예 매매, 그리고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추가 협약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 강제적 노동 협약 (ILO협약 no.29) Forced Labour Convention
- 강제적 노동 철폐 협약 (ILO협약 no.105)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등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to Organize Convention
-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98)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 노사관계 (공공서비스) 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51) Labour Relations (Public Service) Convention

○ 고용

-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54)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mo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68)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 독립국가의 원주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 (ILO협약 no.169) Convention concerning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in Independent Countries

○ 국적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

- 혼인의 동의, 혼인을 위한 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nsent to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

- 정정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ights of Correction